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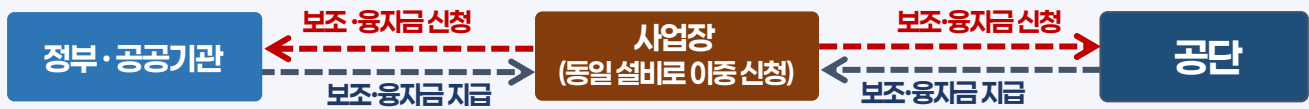
부정수급 사이렌

[2026-06호]

동일한 설비로 정부·공공기관 보조금을 중복 수령, “부정당 행위”

[CASE] 부정사례

행정부처 또는 공단 외 공공기관의 용자·보조금을 지급(또는 지급 결정) 받은 설비임에도 산재예방활동 보조·지원을 이중 신청하여 용자·보조금을 중복 지원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함



→ 동일설비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을 이중 신청하여 중복 지원받는 행위 금지

[SCHEME] 부정수법

1. 동일 설비를 다른 설비인 것처럼 신청 (예) “CNC 선반을 자동가공설비로...” 설비명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
2. 2개 이상의 기관에 해당 지원사업을 단독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
(중복지원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 확인서 제출)

[RISK] 행정처분

※ 동일설비 중복수급을 위한 고의성 및 기망행위가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제1호(거짓·부정)에 해당

- (환수)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및 이자 환수
- (추가환수) 지급된 보조금의 5배
- (참여제한) 향후 5년간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형사고발) 형법 제347조(사기)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부정수급 신고방법>

-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https://portal.kosha.or.kr/>)

고객센터



민원질의하기



부정행위신고

